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56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척·기피·회피 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(안 제5조제3항)

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
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회장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8조 ~ 제14조</u>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u></p> <p><u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 ~ 제15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</p>

현 행

[별지 제2호서식]

기금출납부

연월일	작요	수입	지출	결재			
				담당	계장	과장	국장

개정안

[별지 제2호서식]

기금출납부

연월일	작요	수입	지출	결재			
				담당	계장	과장	국장

[별지 제2호서식]

기 금 출 납 부

연 월 일	적 요	수 입	지 출	결 재			
				담 당	팀 장	과 장	국 장